# 계약직근로자연봉관리세칙

정 2000. 1. 3 제 1차개정 2002. 1. 1 제 2차개정 2002, 6.15 제 3차개정 2002.12.24 제 4차개정 2004. 7.27 제 5차개정 2004.12.28 제 6차개정 2005.12.30 제 7차개정 2006.12.22 제 8차개정 2008. 1. 1 제 9차개정 2008. 5.23 제10차개정 2008.12.29 제11차개정 2010. 1. 1 제12차개정 2011. 7.28 제13차개정 2013. 6. 5 제14차개정 2013.11.19 제15차개정 2014. 1.27 제16차개정 2014. 4.17 제17차개정 2015. 1.28 제18차개정 2015. 7. 1 제19차개정 2016. 2. 1 제20차개정 2017. 1. 1 제21차개정 2018. 2.21 제22차개정 2019. 1. 1 제23차개정 2021. 1. 1 제24차개정 2021. 6. 1 제25차개정 2022. 1. 1 제26차개정 2023. 5. 1 제27차개정 2024. 1. 1 제28차개정 2024. 3.15 제29차개정 2025. 1. 1 제30차개정 2025. 7. 1

#### 제1장 총 칙

- **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「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」 제33조에 따라 계약직근로자의 연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5.12.30, 2013.11.19., 2014.4.17., 2015.7.1.)
- **제2조(정의)**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04.12.28, 2008.12.29, 2013.11.19., 2014.4.17., 2015.7.1., 2024.03.15., <u>2025.7.1.</u>)
  - 1. "기본연봉"이란 연간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총액을 말한다.
  - 2. "성과연봉"은 인센티브성과급과 특별성과급을 말한다.
  - 3. "연봉월액"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  - 4. "일할계산"이란 연봉월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.
  - 5. <u>삭 제<2025.7.1></u>

## 제2장 연봉의 구성

- **제3조(연봉의 체계)** 계약적근로자의 연봉의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02.6.15, 2002.12.24, 2005.12.30., 2014.4.17., 2024.03.15., 2025.7.1.)
  - 1. 기본연봉
  - 2. 성과연봉
  - 3. 삭 제<2025.7.1>
- **제4조(기본연봉)** ① 계약직근로자의 기본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.(개정 2002.6.15, 2002.12.24, 2004.12.28, 2005.12.30., 2006.12.22, 2011.7.28, 2013.6.5, 2013.11.19, 2014.4.17., 2016.2.1., 2017.1.1., 2018.2.21., 2021.1.1.)
  - 1. 「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」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용하는 자 : 별표 1의 나. 범위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산정한다.(개정 2023.5.1.)
  - 2. 삭 제<2023.5.1>
  - 3. 「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」제2조제5항에 따라 채용하는 자 : 별표 1의 다. 와 같다.(개정 2025.1.1.)
  - 4. 전문계약직 등급별 기본연봉표는 별표 1의 나-1)로 하며, 일반계약직 및 시설계약직 등급별 기본연 봉표는 별표 1의 나-2)로 한다.(개정 2023.5.1)
  - 5. 일반계약직 및 시설계약직의 기본연봉표에서 직무등급에 따라 별표1의 나-2)로 직무급을 지급한다. (신설 2022.1.1.)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일정한 경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, 별표 1의 등급별 기본 연봉표 상한을 초과하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약의 연장이 필요한 때는 별표 1의 나-1. 1)의 단서에 따른 인상률을 상한으로 적용하여 연봉을 산정할 수 있다.(신설 2014.4.17., 2015.7.1., 2017.1.1., 2023.5.1)
  - ③ 계약직근로자의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 제30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한다.(신설 2014.4.17., 개정 2016.2.1., 2019.1.1)
- 제5조(성과연봉) ① 계약직근로자의 성과연봉은 인센티브성과급과 특별성과급으로 한다.(신설 2014.4.17)
  - ② 인센티브성과급은「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」 제5장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표 3의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 다만, 직무의 특수성으로 별도의 지급기준이 필요한 경우, 사장이 따로 정 하여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02.1.1, 2002.12.24, 2004.12.28, 2005.12.30, 2006.12.22, 2010.1.1, 2011.7.28, 2013.11.19, 2014.4.17)
  - ③ 특별성과급은 공사 경영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급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(신설 2014.4.17)
  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실시 이전에 퇴직하는 자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별표 3의 "B등급"을 적용하여 성과연봉을 산정한다.(신설 2005.12.30, 개정 2008.1.1, 2010.1.1, 2011. 7.28, 2014.4.17.)

제5조의2 <u>삭 제<2025.7.1></u>

**제6조** 삭 제<2014.4.17>

#### 제3장 연봉의 지급

**제7조(지급방법)** ① 기본연봉은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.(개정 2013.11.19)

- ② 성과연봉은 연 1회 12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(개정 2002.6.15, 2008.1.1)
- ③ 삭 제 <2008.12.29>
- ④ 삭 제 <2008.12.29>
- ⑤ 삭 제 <2019.01.01>
- 제8조(지급일) 기본연봉은 매월 21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 근무일에 지급한다.(개정 2015. 7. 1.)
- **제9조(계산기간)** ① 기본연봉의 계산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.(개정 2005.12.30)
  - ② 성과연봉의 지급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.(신설 2005.12.30, 개정 2008.1.1)
  - ③ 신규채용ㆍ퇴직ㆍ휴직ㆍ복직ㆍ정직ㆍ감봉 및 직위해제의 경우 발령일로부터 일할계산 한다. 다만, 퇴직시 연봉월액의 지급은 「연봉제규정」제6조제6항제3호를 준용한다.(개정 2005.12.30., 2013.11.19., 2017.1.1.)
- **제10조(결근자의 연봉)**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05.12.30, 2013.11.19.)
- 제11조(휴가 및 휴직자의 연봉) ①「취업규칙」제18조에 따른 휴가기간 중에는 기본연봉을 지급하며, 연차휴가는「취업규칙」제19조의2를 적용하되, 한국농어촌공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보상한다.(개정 2011.7.28, 2013.11.19)
  - ② 휴직자의 휴직기간 중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05.12.30, 2013.11.19)

#### 제4장 삭제(2008. 1. 1)

**제12조** 삭 제<2008.1.1>

제13조 삭 제<2008.1.1>

**제14조** 삭 제<2008.1.1>

**제14조의2(계약직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)** 계약직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는 「연봉제규정」제25조를 준용한다.(신설 2008.5.23. 개정 2014.4.17., 2017.1.1.)

## 제5장 퇴직금

- **제15조(지급사유)** ① 퇴직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다.(개정 2013.11.19)
  - 1. 의원면직
  - 2. 직권면직
  - 3. 사 망
  - 4. 계약기간 만료
  - ② 근속기간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13.11.19)
- 제16조(퇴직금 중간정산)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개정 2002.6.15, 2013.11.19)
  - ②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연봉제규정시행세칙」 제22조를 준용한다.(개정 2002.6.15.,

2004.12.28., 2017.1.1.)

- **제17조(근속기간)** ① 근속기간은 입사월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사유 발생한 월까지로 한다.(개정 2013.11.19)
  - ② 근속기간 계산에서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월할 계산한다.(개정 2015.7.1.)

제18조 삭 제 <2004.12.28>

- **제19조(평균임금)** 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.(개정2002.6.15, 2002.12.24, 2005.12.30, 2008.12.29., 2013.11.19., 2015.7.1.)
  - 1.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연봉
  - 2. 삭 제 <2008.12.29>
  - 3.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성과연봉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
  - ② 평균임금은 제1항의 기초금액을 합하여 90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(개정 2013.11.19)

제20조 삭 제<2008.1.1>

**제21조(퇴직금 지급)** 「연봉제규정」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(개정 2004.12.28., 2013.11.19., 2017.1.1.)

제22조 삭 제<2008.1.1>

제22조의2(퇴직금의 예외적 지급) 「연봉제규정」제34조를 준용한다.(신설 2004.12.28., 2017.1.1.)

#### 제6장 보 칙

- **제23조(끝수처리)** 연봉계산시 단수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(개정 2005.12.30., 2013.11.19., 2015.7.1., 2023.5.1.)
  - 1. 연봉계산의 산출과정에서 "원"단위까지는 산출하고 "원" 미만은 버린다.
  - 2. 연봉의 최종계산은 "십원" 단위까지는 산출하고 "십원" 미만은 버린다. 다만, 연봉월액의 최종 계산시에는 "천원" 미만은 버린다.
- 제24조(여비) 계약직근로자가 공무로 여행시 여비지급기준은 별표 5에 따르며, 일수계산 등 여비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여비규정」을 준용한다.(개정 2013.11.19, 2014.4.17)
- 제25조(2조격일제, 감시·단속적 근로 형태의 계약직근로자의 연봉) 2조격일제, 감시·단속적 근로에 종 사하는 계약직근로자의 연봉은 근무 형태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을 적용한다.(개정 2002.6.15, 2005.12.30, 2014.4.17)
- 제26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을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02.6.15]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00년 1월 3일로부터 시행하되,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02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
①(시행일) 이 세칙은 200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계약직사원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제16조 (퇴직금 중간정산) 및 제19조(평균임금)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0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세칙은 200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①이 세칙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되,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주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감소된 연차휴가수당은 2004년에 한하여 가산 지급한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14조의2는 2008년 3월3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1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되,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하되,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1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1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 신규 채용된 계약직근로자부터 적용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미 채용된 자와의 재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세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봉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일 이전 고용되어 세칙 시행일 이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"별표 1"에 따라 산정된 기본연봉이 종전 기본연봉 보다 적을 경우 제4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본연봉을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이 세칙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금인상) 기존 근무 중인 전문계약직은 제4조 별표 1의 다항 1에도 불구하고,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정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자녀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## 부 칙

이 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자녀수당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5호, 제3조제3호 및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 [별표 1\_연봉등급표, 기본연봉표, 산정표] <제4조 관련> (개정 2002.6.15, 2002.12.24, 2004.12.28, 2005.12.30, 2006.12.22, 2011. 7.28, 2013.6.5, 2014.4.17, 2015.1.28., 2016.2.1., 2017.1.1., 2018.2.21., 2021.1.1., 2021.6.1., 2022.1.1., 2023.5.1., 2024.01.01., 2025.01.01..)

## 가. 계약직근로자 연봉등급표

구 분	등급	종사 직무 및 채용자격		
전문계약직	가	변호사		
	나	공인회계사		
	다	세무사, 감정평가사, 건축사, 기술사, 보험계리사, 박사		
	라	공인노무사,「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자격 소지자(가~다 등급 자격 제외)		
	마	특수장비운전원		
이 피 케 아	가	유관협회 지원, 업무지원		
일반계약직	나	청사관리		
	가	전기안전관리자 (전기기사, 전기기능장)		
시설계약직	나	전기안전관리자 (전기산업기사)		
	다	현장 유지관리업무		

나. 전문계약직 기본연봉 산정표 및 일반(시설)계약직 등급별 기본연봉표

나-1). 전문계약직 기본연봉표 산정표

	(A)		(C) 경력적용 <sup>2)</sup>				
등급	기준급 (천원)	(B) 직무급 등	표준가산급 적용 직급	경력 상한 <sup>3)</sup>	경력 인정률	경력 가산율	비고
가	51,984	연봉제규정시행세칙 별표1의2 3~5급 "나"등급 + 동일 세칙 별표2의 1) 기술자격 직무급	연봉제규정 별표1 "3급"	15년	200%		
나	51,504	연봉제규정시행세칙 별표1의2 3~5급 "다"등급 + 동일 세칙 별표2의 1) 기술자격 직무급	연봉제규정 별표1 "3급"	15년	150%	6년이상 120%	
다	44,256	연봉제규정시행세칙 별표1의2 3~5급 "라"등급 + 동일 세칙 별표2의 1) 기술자격 직무급	연봉제규정 별표1 "4급"	15년	150%	11년이상 150%	
라	36,888	연봉제규정시행세칙 별표1의2 3~5급 "마"등급 + 동일 세칙 별표2의 1) 기술자격 직무급	연봉제규정 별표1 "4급"	10년	150%		
마	29,304	연봉제규정시행세칙 별표1의3 6급"라"등급	연봉제규정 별표1 "6급"	10년	100%	_	

- 1) 기본연봉이란 기준급과 직무급, 경력적용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(A+B+C). 이 세칙 시행이후 기존 전문계약직 근로자와 연장계약 체결 시 기본연봉은 이전 기본연봉에 신규 계약임용일 적용되는 "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"의 직원 임금인상률을 가산하여 산정
- 2) 경력적용은 각 등급별 표준가산급에 경력연수 및 경력인정률, 경력가산율을 모두 곱한 금액으로 산정. 경력가산율의 경우 가~라 등급에 한해 경력이 6년 이상이면 120% 가산, 11년 이상이면 150%를 가산
- 3) 경력은 관련자격증 취득일 이후의 동일 분야 근무경력만 반영

나-2). 일반(시설)계약직 등급별 기본연봉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등급	기 본 연 봉			비고
1 正	<u>о</u> н	기본급	직무급	합계	u
일반 계약직	가	24,384	<u>2,323</u>	<u>26,707</u>	
	나	22,975	<u>2,175</u>	<u>25,150</u>	
,1,1	가	27,096	<u>2,588</u>	<u>29,684</u>	
시설 계약직	나	24,384	<u>2,323</u>	<u>26,707</u>	
711 - 1 - 1	다	22,975	<u>2,175</u>	<u>25,155</u>	

## 다.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고용하는 일반계약직 기본연봉 산정표

	채용분야	기본연봉 <sup>2),3)</sup>		
구 분	기술 부문 (기계/설비/전기/ 정보통신/ 건설/환경)	기타 부문 (착정·공감 보조 등)	기술 부문	기타 부문
(A) <sup>1)</sup>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	<ol> <li>기사 &amp; 해당분야 11년이상</li> <li>산업기사 &amp; 해당분야 14년이상</li> <li>기능사 &amp; 해당분야 18년이상</li> </ol>	-	A × 22 × 12	-
(B=A*80%)	1. 기사 & 해당분야 7년이상 2. 산업기사 & 해당분야 11년이상 2. 기능사 & 해당분야 15년이상	경력 10년이상	$B \times 22 \times 12$	B × 22 × 12 × 80%
(C=A*70%)	<ol> <li>기사 &amp; 해당분야 4년이상</li> <li>산업기사 &amp; 해당분야 8년이상</li> <li>기능사 &amp; 해당분야 12년이상</li> </ol>	경력 5년이상	C× 22 × 12	C× 22 × 12 × 80%

- 1) 이 규정 시행 이후 적용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(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)의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"기타" 부문 "고급숙련기술자" 단가 적용
- 2) 연봉월액 : 일 단가 × 22일(천원이하 절사), 기본연봉 : 연봉월액 × 12
- 3) 마케팅, 지역개발, 부동산, 해외사업 등의 기본연봉 산정 기준은 제4조제2항에 따름

[별표 1의2] 삭 제<2019.1.1.>

[별표 3\_인센티브성과급 지급율표] <제5조 관련> (개정 2010.1.1., 2014.4.17)

##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율표

등 급	성과연봉 지급율	차등지급율	비고
S등급	연봉월액의 150%	+50%	
A등급	연봉월액의 120%	+20%	
B등급	연봉월액의 100%	_	
C등급	연봉월액의 80%	-20%	
D등급	연봉월액의 50%	-50%	

[별표 4] 삭 제<2014.04.17.>

[별표 5\_여비지급 기준표] <제24조 관련> (개정 2008.1.1, 2013.6.5., 2014.1.27)

# 여비지급 기준표

구 분	지급기준	비고
국내여비	부 원	여비규정 준용
국외여비	4급이하	역미1178 군 <i>융</i>

계약직근로자연봉관리세칙

[별표 6] 삭 제<2008.1.1>

[별표 7] 삭 제<2008.1.1.>